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46,247,519	22,387,426
일반회계	669,734,207	20,092,026
특별회계	76,513,312	2,295,399
공기업특별회계	63,836,822	1,915,105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1,600,596	948,018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2,236,226	967,087
기타특별회계	12,676,490	380,295
의료보호특별회계	2,468,687	74,061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914,222	27,42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726,329	171,790
주택사업특별회계	522,861	15,686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3,044,391	91,332

제 2 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예산 " 과 같다.

제 3 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 12,470,491 " 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 기준인건비 " 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게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